

#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심사 보고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월 6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5년 1월 10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1월 16일 상정 ·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산림과장)

#### 가. 제안이유

-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해 조성한 ‘평창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관리 ·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사용료 징수 · 예산지원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목재문화체험장의 기능(안 제4조)
- 체험장의 운영 및 예산지원(안 제5조 ~ 안 제9조)
- 체험료의 징수 및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2조)
- 체험장 운영 활성화(안 제13조)

- 보험가입, 손해배상 등(안 제15조 ~ 안 제16조)
- 위탁계약, 준용 규정 등(안 제17조 ~ 안 제19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 [붙임 1]

###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 5. 토론 요지: 「없음」

###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조례안 개요

- 제안자 : 평창군수 제출
- 제안일자 : 2025. 1. 6.
- 회부일자 : 2025. 1. 10.
- 상정일자 : 2025. 1. 16.

### 2. 제안이유

-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해 조성한 ‘평창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사용료 징수·예산지원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목재문화체험장의 기능(안 제4조)
- 체험장의 운영 및 예산지원(안 제5조 ~ 안 제9조)
- 체험료의 징수 및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2조)
- 위탁계약, 준용 규정 등(안 제17조 ~ 안 제19조)

## 4. 검토의견

### 가. 관련 근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 구현을 위한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나. 입법의 취지

- 평창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4조(기능)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5조(운영 및 예산의 지원)에서 체험장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0조(체험료의 징수)에서는 체험장의 입장료 및 체험료의 비

용 및 결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체험료의 감면)에서는 체험료 감경의 경우와 증명 방법에 대해 규정함.

- 안 제12조(체험료의 반환)에서는 체험료를 체험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반납하는 경우를 규정함.

##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 및 지역 소득증대를 위하여 평창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입법의 취지가 인정되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

## 불임1 관계법령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불임 참고 자료

- 화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2024.7.2.) 외 34건  
(관내 2곳: 화천군, 정선군)

#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82
----------	-----

제출년월일 : 2025. 1. 6.

제출자 :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해 조성한 '평창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사용료 징수·예산지원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나. 목재문화체험장의 기능(안 제4조)
- 다. 체험장의 운영 및 예산지원(안 제5조 ~ 안 제9조)
- 라. 체험료의 징수 및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2조)
- 마. 체험장 운영 활성화(안 제13조)
- 바. 보험가입, 손해배상 등(안 제15조 ~ 안 제16조)
- 사. 위탁계약, 준용 규정 등(안 제17조 ~ 안 제1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2025년 예산에 450백만원 반영되었음
-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타 :
- 1) 입법예고(2024. 10. 11. ~ 10. 30.) 결과 별첨(제출의견 1건, 미반영)
    - 평창군 공고 제2024-1388호, 산림과-5093(2024. 10. 4.)호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4655(2024. 9. 23.)호]
  -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기획예산과-4655(2024. 9. 23.)호]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반영 [가족복지과-11118(2024. 9. 30.)호]
    - 체험료 감면 사유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
    - 시설 입장 또는 거부 사유에 '혐오 및 유해동물'을 '반려동물'로 개선
  -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9867(2024. 12. 17.)호]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10519(2024. 12. 27.)호]

##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평창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평창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평창군 평창읍 산책길 180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 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을 만들거나 목재를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체험장의 목재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 · 운영하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 · 운영하는 사람(법인 · 단체 및 개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기능)**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통한 목재문화의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 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3. 목재를 포함한 산림자원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4.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5.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홍보
6. 목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지원

**제5조(운영 및 예산의 지원)** ① 체험장은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체험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목공예기능사, 목공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과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인적인 목공 작업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 의해 사용허가·위탁 등의 절차를 이행한 자의 작업은 허가할 수 있다.

**제6조(강사 초빙 등)** 군수는 각종 목재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① 체험장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 ~ 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사전에 조정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휴장)
2. 1월 1일, 설 연휴와 추석 연휴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장일

③ 군수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체험장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행위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제15의 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2. 음주, 흡연 및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
3.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사람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5.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 반입 행위
6.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 제한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체험료의 징수)** 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 ② 목재 체험 프로그램의 체험료는 별표에 따르며, 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은 체험자가 직접 부담하거나 별도로 징수한다.
- ③ 체험료는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체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  
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

환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1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에 필요한 경우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표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체험료의 30퍼센트  
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

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및 관련 행사 참  
가자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4. 「주민등록법」에 따라 체험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12조(체험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수한 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
  - 가. 체험 예정일 5일 전까지 체험 예약 신청을 취소한 경우
  - 나. 제9조에 따라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
  - 다.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
  -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 혹은 발생이 예견되어 체험을 못하는 경우
  - 마. 그 밖에 군수가 반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체험하려는 사람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반환
  - 가. 체험 예정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예약신청을 취소하는 때: 납부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 나. 체험 예정일 1일 전에 예약신청을 취소하는 때: 납부 금액의 20% 공제 후 반환

다. 체험 예정일 당일 예약 신청을 취소하거나 취소 통지가 없을 때:  
납부 금액의 30% 공제 후 반환

**제13조(체험장 운영 활성화)** 군수는 체험장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상품 발굴,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수익 확보 방안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편의시설 운영 등)** 군수는 체험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매점, 휴게실 등 편의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제15조(보험가입)** 군수는 체험장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군수는 수탁기관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계약 등)** ①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위탁내용,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기간,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단위: 원)

구분	체험료		비고
	개인	단체	
목공예 체험	성인	3,000	체험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체험자가 별도 부담
	청소년	2,000	1,000

[비고]

- 목공체험 기본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제3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감면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체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 관계법령 발췌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붙임 2]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1. ~ 30.(20일간)**

□ **제출의견 : 1건(평창읍 유○○)**

- 목재 체험관에 서각체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되었으면 함.  
서각도 목재를 활용한 체험이 가능하므로 서각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하다고 생각됨, 목재체험관에 목재관련된 자격증 소유자만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임.

□ **검토결과**

- (미반영) 조례안 제5조(운영 및 예산의 지원) 조문은 자격증 종류  
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000 등 자격증 소지자’로 표현하여 목  
재·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초빙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6조  
에 명시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목재체험에 대하여 강사 활동이 가능함.

## [붙임 3]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운영

○ 관련조문

**제5조(운영 및 예산의 지원)** ① 체험장은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체험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목공예기능사, 목공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6조(강사 초빙 등)** 군수는 각종 목재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체험장 운영 활성화)** 군수는 체험장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상품 발굴,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수익확보 방안 등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은 자체 재원(군비)으로 지출
  - 체험료 징수로 수입금 발생
- ※ 평균 2,500원으로 산정(성인, 청소년 평균 체험료)

### 나. 추계 결과

#### ○ 세입

구분	내용	산출기초	금 액	비고
합계			25,000천원	
체험료	목공 체험료(연간)	10,000명 x 2,500원	25,000천원	

#### ○ 세출

(단위: 천 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소요액	590,500	281,000	281,000	281,000	281,000	1,714,500
장비구입비	350,000					350,000
시설공사	50,000					50,000
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등)	190,500	281,000	281,000	281,000	281,000	1,314,500

※ 2025년 당초예산 450,000천원 확보, 하반기 운영비(140,500천원)는 1회 추경 반영 예정

###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재원 조달, 체험료 수입금

##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도시안전국 산림과장 이성모
연락처	(033) 330 - 245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12,500	25,000	25,000	25,000	25,000	112,500
체험료	12,500	25,000	25,000	25,000	25,000	112,500
세 출	590,500	281,000	281,000	281,000	281,000	1,714,500
장비구입비	350,000					350,000
시설공사	50,000					50,000
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등)	190,500	281,000	281,000	281,000	281,000	1,314,500
재원 조달	590,500	281,000	281,000	281,000	281,000	1,714,5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90,500	281,000	281,000	281,000	1,714,500
	지방세					
	세외수입 (체험료)	12,500	25,000	25,000	25,000	112,500
	군비	578,000	256,000	256,000	256,000	1,602,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